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중개형 상품 설명서

[핵심(요약)설명서]

1. [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]

구분	ISA중개형	ISA신탁형	ISA일임형
특징	투자자가 직접 운용	1:1 계약체결 후 고객의 운용지시대로 운용	회사가 제시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일임운용
계약형태	위탁매매계약	신탁계약	일임계약
투자가능상품	국내상장주식, 펀드, ETF, ELS, 채권, RP 등	펀드, ETF, ELS, RP, 예금 등	펀드, ETF, ELS, RP 등

2. [발생가능 불이익에 관한 사항]

-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또한,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중도인출은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내(예상세액 제외)에서 가능하지만, 입금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.
- 국세청 통보에 의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, 세제혜택이 소멸되어 세제혜택분을 추징하고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.
- 만기연장시 연장일 직전년도 소득에 따라 가입유형을 재확인하며, 가입유형(일반형/서민형/농어민)이 변경되는 경우 세제혜택 한도가 변경된 유형으로 전기간 적용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중도해지 등의 경우에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[투자위험등급]

- 이 계좌는 별도의 위험등급은 없으나,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1등급(매우높은위험)~6등급(매우낮은위험)으로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계좌에 편입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

4. [유의사항]

-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가능하며,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.
- 계좌해지일에 이연된 세금이 일괄 원천징수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좌만기일 이후 입금, 계좌이전, 청약, 매수 등이 불가하며 세제혜택만료일 익일부터 출금이 불가 합니다.

5. [민원·상담 시 이용 가능 연락처]

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(☎1588-26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myasset.com)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및 금융투자협회(☎02-2003-9421~3)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

[ISA 중개형 주요제도]

1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란?

ISA는 펀드, ELS,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 관리하여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(비과세+저율분리과세)를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.

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상품 유형

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중개형, 신탁형, 일임형으로 구분되며, 3가지 계약 형태 중 한가지만 가입 가능합니다.

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오니, 가입하시기 전 ISA 계약 유형과 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상품유형	주요 운용 방법
중개형	위탁매매계좌 형태로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
신탁형	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 운용 지시대로 운용
일임형	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운용

3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중개형 상품 설명

1) 가입 대상

- 만 19세 이상 거주자(단, 만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)

2) 가입 유형 및 유형별 필요 서류(거주자 기준)

구분		가입요건	필요 서류
일반형	만19세 이상	-	실명확인증표
	만15~19세 미만	직전년도 근로소득 O	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
서민형	만19세 이상	근로소득 5천만원,	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
	만15~19세 미만	종합소득 3.8천만원 이하	
농어민	만19세 이상	종합소득 3.8천만원 이하	농·어업인확인서 +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
	만15~19세 미만		

※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
※ 서민형 가입 후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 받을 경우, 일반형으로 전환됩니다.

※ 부적격 확인시 세제혜택 소멸 및 세제 혜택분은 추징될 수 있으며,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

3) 투자권유준칙 등

- 투자권유준칙, 대면녹취, 숙려제도 등은 기존 계좌들과 동일하게 적용

4) 거래 가능 상품

- 예탁금, 펀드(ETF 포함), 파생결합증권(ELB/DLB, ETN 등 포함), 국내상장주식, RP, 국내채권 등

5) 의무가입기간

- 3년 이상(연장 가능)

6) 납입한도

- 연 2천만원,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
2천만원 X [1 + 가입 후 경과한 연수(경과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4년)] - 누적 납입금액

7) 중도인출

- 납입 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인출 가능
※ 중도 인출 가능금액 계산시 인출일 기준, 예상되는 세금금액 상당액을 차감합니다
※ 중도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만큼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.

8) 수수료

- 가입,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음
- 편입 금융상품별 보수(판매보수 등)는 별도로 부과
- 주식 매매 수수료는 현행과 동일
※ 홈페이지(www.MyAsset.com) > 고객센터 > 업무안내 > 수수료안내 > '매매수수료' 참조

9) 만기 및 해지

구분	내용
만기 연장	- 만기일의 3개월전부터 계약 만기일 전일까지 만기 연장 가능 - 만기연장의 시작일은 신청일이 아닌 기존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부터 산정 -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연장 시 일반형 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, 연장 후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 적용 -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 대상자일 경우,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 추징
만기 해지	- 의무가입기간이(3년) 만료되었으나 만기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, 세제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 계좌내 상품을 계약 만기일부터 즉시 환매•매도 필요 - 세제 혜택은 상품별 환매•매도 금액 입금일 또는 만기일 경과 후 30일 중

	빠른 날(세제혜택만료일)로 산정 - 일부 금융투자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해당 상품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에서 제외(일반과세)
중도 해지 (인출)	- 의무가입기간(3년) 이전의 해지(인출) 또는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,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. -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 - 단, 의무 보유기간 3년 이후 연장 계약의 잔존 만기를 다 채우지 않고,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까지 세제혜택을 부여
특별 중도 해지	- (아래)사유로 만기일 이전에 해지 시, 만기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 - 사유: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, 퇴직, 폐업,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,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·파산 등

10) 계좌 이전

- 기존 가입계좌에서 타사의 같은 유형 또는 다른 유형의 ISA로 이전 가능합니다.
- 계좌 이전을 하는 경우 비과세·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며,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계좌 이전은 현금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, 모든 편입자산의 환매 및 현금화 이후 이전이 가능 (일부 금액만 이전은 불가)

11) 손익통산

- 각 금융상품 과표를 계좌 해지일까지 이연하여 합산
 - ①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손실을 차감
 - ② '①'에서 남은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
 - ③ '②'에서 남은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는 순서로 진행
- 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
 - ① 펀드 :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(과세손익)
 - ② 파생결합증권(ELB,DLB 등 포함) : 배당손익(실질소득)
 - ③ ETF, ETN : 과표차익(차손) 및 매매차익(차손) 중 작은 값
 - ④ 국내 상장 주식 : 양도 차손
 - ⑤ 국내채권 : 이자소득

12) 과세 특례 사항

- 가) 계좌 가입 기간에서 발생한 이익과,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부여
- 200만원(서민형, 농어민은 400만원)까지 : 비과세

- 200만원(서민형, 농어민은 400만원) 초과 순소득 : 9.9% 분리과세(지방소득세 포함)
※ ISA 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,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
추가 세제혜택 가능

나) 세제혜택 제외

- 의무가입기간 내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
-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시점 또는 특별해지시점에 환매 매도되지 않은 재산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 손익통산 및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미부여

13) 유의사항

-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 단, 이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 (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-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중도해지 등의 경우에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 계좌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와의 위탁매매 또는 매매 계약을 통해 고객이 직접 해당 계좌를 운용합니다.
- 이 계좌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됩니다.
-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 불가합니다.
-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손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.
- 이 계좌는 계좌만기일 이후 입금, 계좌이전, 청약, 매수 등이 불가하며 세제혜택만료일 익일부터 출금이 불가합니다.
- 세제혜택만료일 이후 출금을 원하시면 계좌 해지 후 처리 가능합니다.
- 이 계좌는 계좌해지일에 이연된 세금이 일괄 원천징수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계좌 내 편입된 금융상품 중 관계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
- 당사는 본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
- 가입하시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은 제한됩니다.

■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(☎1588-26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myasset.com)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및 금융투자협회(☎02-2003-9421~3)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

[2025. 9. 1 개정]

■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